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69 호

2007년 8월 24일 금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79호(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83호(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86호(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89호(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90호(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92호(공시송달 공고) 4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895호(개각 및 폐기 공고) 5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2호(남동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공고) 5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879 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05.10)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 년 8 월 17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08. 17 ~ 2007. 8. 28.(11일간)

2. 사업내역

사업명 :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신축공사

가. 사업주체 : (주)삼정하우징 대표 이주열, 정덕수

☎ 032-435-4787

나. 설계자 : (주)문중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 양 근

☎ 02-2671-9141

다. 시 공 자 : (주)현대건설 대표 이 종 수

☎ 02-746-3154

라. 사업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94-1외24필지
- 대지면적 : 40,031㎡
- 건축연면적 : 127,718.1361㎡
- 규 모 : 공동주택 5개동(지하2층, 지상32층)
- 세대수 : 594세대
- 공사기간 : 2007.09.10 ~ 2010.12.31(40개월)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 2007.07.18
- 사업계획승인일 : 2007.08.17

마.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 342,421,125천원
- 대 지 비 : 127,052,418천원
- 총 공 사 비 : 117,153,489천원(타법 포함)
 -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 2.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 99,708,098천원
- ※ 부가세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4의 공사비는 제외
- 타법감리공사비 : 17,445,391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 감리예비가격 :
2,662,624,990원
(건축공사비의 2.67042% 적용)

감리최고예비가격 :
2,662,624,990원
감리최저예비가격 :
2,502,867,490원

- ① 2,662,624,990원
- ② 2,651,213,320원
- ③ 2,639,802,440원
- ④ 2,628,391,250원
- ⑤ 2,616,979,990원
- ⑥ 2,605,568,380원
- ⑦ 2,594,157,160원
- ⑧ 2,582,746,480원
- ⑨ 2,571,334,370원
- ⑩ 2,559,923,390원
- ⑪ 2,548,512,620원
- ⑫ 2,537,101,010원
- ⑬ 2,525,689,620원
- ⑭ 2,514,278,540원
- ⑮ 2,502,867,490원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가. 건축공사 : 2007. 09. 10 ~ 2010. 12. 31 (40개월)

나. 토목공사 : 1차 2007. 09. 10 ~ 2008. 05. 31 (9개월)

2차 2009. 12. 01 ~ 2010. 12. 31 (13개월)

다. 기계설비공사 : 2007. 12. 01 ~ 2010. 12. 31 (37개월)

※ 주요 공정계획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표와 동일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감리원 배치계획은 위 공정표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4.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 명단 기입)

②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
주체, 감리자 명기

③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및 서약서

④ 감리원 배치계획서

⑤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시고 별지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는
우선순위 상위 5개업체에 한하여 제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①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제4호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②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③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④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⑤ 업무중첩도 관련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⑥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⑦ 교체빈도(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⑧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⑨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확인)
- ⑩ 감리업무수행계획서
- ⑪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 건축사보 증명 : 300세대 미만인 경우(당해 감리자 소속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급분도 가능)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 발급분도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신규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 중첩도 및 교체빈도(5점)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감리자지정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정”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협회에 사실조치로 평가 합니다.

다. 유의사항

- ①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②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사본등을 제외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단,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전 발급분 및 사본도 인정함
- ③ 상기 “가” 항 접수시 제출서류 중 ① ② ③ ④ ⑤ 를(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 ④ 상기 “가” 항 접수시 제출서류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 “고발” , “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⑤ 감리자(회사)의 감리업무수행실적, 감리업무수행결과, 행정제재여부 등을 평가시,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감리전문회사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함.

5.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① 일 시 : 2007. 08. 29 (수요일) 09:00부터 12:00까지 한함(시간엄수)
- ②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층 건축과 사무실
- ③ 유의사항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

6.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등

가. 평가기준

- ①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2007.05.10)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① 공고 ⇒ 서류접수 ⇒ 평가(자기평가서·제출서류) ⇒ 예정가격 추첨 · 입찰서 개봉/순위 선정 ⇒ 이의 접수 및 열람 ⇒ 상위 5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 포함하여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2007. 8.31일 18:00까지 제출할 것)

- ③ 상위 5개 업체의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유선통보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자료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⑤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⑥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다. 이의신청 및 열람

- 기 간 : 2007. 08. 30 ~ 2007. 09. 05 (5일)(토, 일요일 제외)
- 이의신청 방법 : 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가 문서로써 이의신청 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에 한함(위임장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 ◎ 자기평가표[별지2호서식] - 평가항목별 점수
 -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함

7. 예정가격 등의 추첨일시

- 가. 추첨일시 : 2007. 08. 29일(수) (13:00)
- 나. 추첨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2층 대회의실(건축과 옆)
- 다.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
- 라. 예정가격 추첨에 미참가한 업체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8.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개정(2007.03.16 대통령령 제19935호)에 따라 2007.03.16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감리전문회사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교부고시 제2007-163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 ①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감리원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03.16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②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다. 총괄감리원 : 상기 “나” 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등급이상 이어야 하며 등급미만은 실격 처리함.

- ① 1,0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수석감리사

라. 비상주감리원

- ① “나” 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이상
② 평가대상 비상주감리원이 등급 미만이거나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실격 처리 함.

마.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9.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 유동비율 : 215.78%

나. 평균 자기자본비율 : 55.16%

11. 기타 유의사항

- 가.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할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2건 이상 공고시)
-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한다.
-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및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2)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경우 당초 감리용역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 중단 된 기간을 제외한 감리수행 기간을 산정한 실적을 인정함.
 - 3)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 4)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도로, 택지조성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소속 직원)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바.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사실조회 등 5일 동안에 한하며, 이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사.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제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2년간(2005.08.18~2007.08.17)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예정가격 산출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합니다.

차. 5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2점)을 부여합니다.

카.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감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타.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평가 된 경우에는 하향조정 평가합니다.

하.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거.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너.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맞추어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 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 으로 평가하며, 신규감리원의 인·월수는 평가 인·월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더.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러.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며.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동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버.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일임금액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답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6)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어.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번지)

※ 기타 의문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담당자 유성근 ☎032-453-27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1. 총 괄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회사)	재정상태 건 실 도	유동비율	4			예) 00(%)	
		자본비율	3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연면적)		15			예) 100,00(㎡)	
	행정제재		10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1			예) 건설신기술, 특허 (건)	
		기술개발투자실적	1.5			예) 투자실적 : %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5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5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5			예) 적정	
	가 점	감리업무수행결과	(1)			예) 00(점)	
		지역가점	(2)			예) 00도 00개월	
		설계용역수행	(1)			예) 현상 00(점)	
	감리자 소계(A)			50			* 가점 및 감점 합산 후 50점 이내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 괄 감 리 원	등급		6			예) 00(년)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1			* 가점 및 감점 합산 후 21점 이내
	분 야 별 감 리 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6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0.5)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6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0.5)			예) 00(건)	
		연령제한	(-0.5)			예) 만00(세)	
소 계			24			* 감리원 1인당 각 8점 이내	
비상주 감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감리원 소계(B)			50				
총 계(A+B)			100				
총 누 계(전체누계점수)			100±			*가점 및 감점 합산한 총평점 기재	

입찰자(대표자)

(인)

2. 분야별 세부평가(산출근거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소개		5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1) 재무상태 건 실 도		7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평가 : 감리자의 유동비율/전체건축 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 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 적용(4점) - 배점기준																																																									
			<table><tr><td>기 준</td><td>100% 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 미만</td></tr><tr><td>배 점</td><td>4</td><td>3.5</td><td>3.0</td><td>2.5</td><td>2.0</td></tr></table>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4	3.5	3.0	2.5	2.0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4	3.5	3.0	2.5	2.0																																																				
●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 (감리자의 자본비율/전체건축 기술 및 엔 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100(%) -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 적용(3점) - 배점기준																																																												
<table><tr><td>기 준</td><td>100% 이상</td><td>100%미만 75%이상</td><td>75%미만 50%이상</td><td>50%미만 25%이상</td><td>25% 미만</td></tr><tr><td>배 점</td><td>3</td><td>2.5</td><td>2.0</td><td>1.5</td><td>1.0</td></tr></table>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3	2.5	2.0	1.5	1.0																																											
기 준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 미만																																																							
배 점	3	2.5	2.0	1.5	1.0																																																							
산출근거			- 유동비율 평가(유동자산/유동부채 기재)(산출식 기재)																																																									
			- 자본비율 평가(자기자본/총자산 기재)(산출식 기재)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주택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건축공사는 80%인정)의 준공 또는 수 행 중(전체 감리기간중 3년 이내의 감리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 정)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따라 배점 - 배점기준 (단위 : ㎡)																																																									
			<table><tr><th>공사규모</th><th colspan="5">기준 및 배점</th></tr><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50만 이상</td><td>150만 미만 100만 이상</td><td>100만 미만 60만 이상</td><td>60만 미만 30만 이상</td><td>30만 미만</td></tr><tr><td>15</td><td>13.5</td><td>12</td><td>10.5</td><td>9.0</td></tr><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70만 이상</td><td>70만미만 45만이상</td><td>45만미만 15만이상</td><td colspan="2">15만 미만</td></tr><tr><td>15</td><td>13.5</td><td>12</td><td colspan="2">10.5</td></tr><tr><td rowspan="2">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30만 이상</td><td colspan="2">30만 미만 10만 이상</td><td>10만 미만</td></tr><tr><td colspan="2">15</td><td colspan="2">13.5</td><td>12</td></tr><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10만이상</td><td colspan="2">10만미만~5만이상</td><td>5만미만</td></tr><tr><td colspan="2">15</td><td colspan="2">13.5</td><td>12</td></tr></table>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150만 이상	150만 미만 100만 이상	100만 미만 60만 이상	60만 미만 30만 이상	30만 미만	15	13.5	12	10.5	9.0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70만 이상	70만미만 45만이상	45만미만 15만이상	15만 미만		15	13.5	12	10.5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만 이상		30만 미만 10만 이상		10만 미만	15		13.5		12	300세대 미만	10만이상		10만미만~5만이상		5만미만	15		13.5		12		
			공사규모	기준 및 배점																																																								
			1천세대 이상	150만 이상	150만 미만 100만 이상	100만 미만 60만 이상	60만 미만 30만 이상	30만 미만																																																				
				15	13.5	12	10.5	9.0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70만 이상	70만미만 45만이상	45만미만 15만이상	15만 미만																																																					
15	13.5	12		10.5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30만 이상		30만 미만 10만 이상		10만 미만																																																							
	15		13.5		12																																																							
300세대 미만	10만이상		10만미만~5만이상		5만미만																																																							
	15		13.5		12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행정제재	10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제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 : 1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 : 2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3점 감점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3	● 건설기술개발실적(1.0점) -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table><tr><td>구 분</td><td>3년미만</td><td>3년 이상 6년 미만</td><td>6년 이상 10년 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able>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1.5점) -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배점기준 <table><tr><td>구분</td><td>3%</td><td>3.0% 미만</td><td>2.5% 미만</td><td>2.0% 미만</td><td>1.5% 미만</td></tr><tr><td></td><td>이상</td><td>2.5% 이상</td><td>2.0% 이상</td><td>1.5% 이상</td><td>1.0% 이상</td></tr><tr><td>점수</td><td>1.5</td><td>1.2</td><td>0.9</td><td>0.6</td><td>0.3</td></tr></table> ● 교육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2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수	1.5	1.2	0.9	0.6	0.3		
구 분	3년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구분	3%	3.0% 미만	2.5% 미만	2.0% 미만	1.5% 미만																									
	이상	2.5% 이상	2.0% 이상	1.5% 이상	1.0% 이상																									
점수	1.5	1.2	0.9	0.6	0.3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교육 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5)신규 감리원 배치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소속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당해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 평가방법 (단위 : 천세대)																																						
		<table><tr><td>구분</td><td>500세대 미만</td><td>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td><td>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td><td>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td><td>2천세대 이상</td></tr><tr><td>0명</td><td>5.0점</td><td>0점</td><td>0점</td><td>0점</td><td>0점</td></tr><tr><td>1명</td><td>5.0점</td><td>5.0점</td><td>2.5점</td><td>2.0점</td><td>1.5점</td></tr><tr><td>2명</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d>2.5점</td><td>2.0점</td></tr><tr><td>3명</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d>2.5점</td></tr><tr><td>4명이상</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d>5.0점</td></tr></table>	구분	500세대 미만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	5.0점	0점	0점	0점	0점	1명	5.0점	5.0점	2.5점	2.0점	1.5점	2명	5.0점	5.0점	5.0점	2.5점	2.0점	3명	5.0점	5.0점	5.0점	5.0점	2.5점	4명이상	5.0점	5.0점	5.0점	5.0점	5.0점		
		구분	500세대 미만	5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천세대 이상 1천5백세대미만	1천5백세대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0명	5.0점	0점	0점	0점	0점																																	
		1명	5.0점	5.0점	2.5점	2.0점	1.5점																																	
		2명	5.0점	5.0점	5.0점	2.5점	2.0점																																	
		3명	5.0점	5.0점	5.0점	5.0점	2.5점																																	
4명이상	5.0점	5.0점	5.0점	5.0점	5.0점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6)교체 빈도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배점기준																																						
		● 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table><tr><td>비율</td><td>2.5%미만</td><td>2.5%이상 5.0%미만</td><td>5.0%이상 7.5%미만</td><td>7.5%이상 10%미만</td><td>10%이상</td></tr><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0</td></tr></table>	비율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미만	10%이상	배점	5	4	3	2	0																										
		비율	2.5%미만	2.5%이상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10%미만	10%이상																																	
배점	5	4	3	2	0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7)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5	● 평가 및 산정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절하게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5점 ◦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tr><td>구 분</td><td>500미만</td><td>500이상 1,500미만</td><td>1500이상 2,500미만</td><td>2,500이상</td></tr><tr><td>쪽 수</td><td>15쪽이상</td><td>20쪽이상</td><td>25쪽이상</td><td>30쪽이상</td></tr><tr><td>부 문 (내 용)</td><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tr></table>	구 분	500미만	5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	쪽 수	15쪽이상	20쪽이상	25쪽이상	30쪽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구 분	500미만	500이상 1,500미만	1500이상 2,500미만	2,500이상																																		
		쪽 수	15쪽이상	20쪽이상	25쪽이상	30쪽이상																																		
부 문 (내 용)	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없음																																								
산출근거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8)가점소계	(4)											
8-1.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산	(1)	○ 평가 및 산정방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전년도 “감리업무 수행 결과” 의 평정결과 중 “만족”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배점기준 <table> <tr> <td>비율(%)</td> <td>90%이상</td> <td>90%미만 75%이상</td> <td>75%미만 50%이상</td> </tr> <tr> <td>배점</td> <td>1.0</td> <td>0.75</td> <td>0.5</td> </tr> </table> ※ 전년도 감리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점 (0.5)으로 평가한다.	비율(%)	90%이상	9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배점	1.0	0.75	0.5		
비율(%)	90%이상	9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배점	1.0	0.75	0.5									
산출근거		- 만족비율 : 만족건수/전년도 전체평정건수 × 100 =										
8-2.지역가점	(2)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당해 감리자모집공고 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 배점기준 <table> <tr> <td>배점</td> <td>주택건설지역</td> </tr> <tr> <td>2</td> <td>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td> </tr> </table>	배점	주택건설지역	2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배점	주택건설지역											
2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산출근거												
8-3.설계용역 수행가산	(1)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당해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산출근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9)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9-1. 감리원 배치 계획	(적.부)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각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맞추어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단, 비평가대상감리원 1인에 한하여 부분배치도 가능 함 ; 법정 기준 인·월수 초과시)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 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5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며, 신규감리원의 인·월수는 평가 인·월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당해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9-2. 업무 중첩도	(적.부)	● 평가방법 - 총괄감리원 또는 분야별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되어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원포함)에 총괄·책임·분야별·보조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감리자지정권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분야 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근거				

나. 감 리 원

나-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1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1)등 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수석감리사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감리사 이상 : 6점							
산출근거									
(2)경력 및 실적	15	- 감리원 분야별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 배점기준							
		1천세대 이상	15년 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 미만		
		배점	15	13	11	9	7		
		1천세대 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배점	15	13	11	9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자격 가점	(0.2)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4)행정 제재 감점	(-2)	-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5)교체 빈도 감점	(-1)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제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6)연령 제한 감점	(-0.5)	○ 평가 및 산정방법 -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 감점							
		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	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	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	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	만69세 이상			
		-0.1	-0.2	-0.3	-0.4	-0.5			
산출근거									

나-2. 분야별감리원

- 3명(건축·토목·기타설비분야)을 각각 심사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 감리원은 2명(토목, 설비)만 심사하고, **등급·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는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으로 평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4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감리원 각8점(24점) 이내					
(1) 등 급	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감리사 이상		감리사보		
			2		1.8		
		300세대 미만	감리사보				
			2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기타설비 : 등급					
(2)경력 및 실적	18	◦ 평가기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함. ◦ 배점기준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6	5.4	4.8	4.2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4.8	
		300세대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6		5.4		
산출근거	6	- 건축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6	- 토목 :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6	- 기타설비: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직무분야가 건축,기계, 토목에 해당하는 기술사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기타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점	(-1) × 3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기타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5)교체빈도	(-0.5) × 3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기타설비 :												
(6)연령제한	(-0.5) × 3	○ 평가 및 산정방법 - 참여감리원이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 감점 <table border="1"> <tr> <td>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td><td>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td><td>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td><td>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td><td>만69세 이상</td></tr> <tr> <td>-0.1</td><td>-0.2</td><td>-0.3</td><td>-0.4</td><td>-0.5</td></tr> </table>	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	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	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	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	만69세 이상	-0.1	-0.2	-0.3	-0.4	-0.5		
만65세 이상 만66세 미만	만66세 이상 만67세 미만	만67세 이상 만68세 미만	만68세 이상 만69세 미만	만69세 이상										
-0.1	-0.2	-0.3	-0.4	-0.5										
산출근거	(-0.5)	- 건축 : 생년월일 (만 세)												
	(-0.5)	- 토목 : 생년월일 (만 세)												
	(-0.5)	- 기타설비 : 생년월일 (만 세)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1) 등 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기준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수석감리사 이상 : 2점 ○ 감리사 이상 : 1.5점												
산출근거		등급 :												
(2) 경력 및 실적	3	- 감리원 분야별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한 후 아래의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배점기준 <table border="1"><tr><td>경 력</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5년이상</td><td>5년 미만</td></tr><tr><td>배 점</td><td>3점</td><td>1.5</td><td>0점</td></tr></table> ※ 건축분야감리원이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 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3점	1.5	0점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 미만											
배 점	3점	1.5	0점											
산출근거		일(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행정제재 감점	(-1)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산출근거		업무정지등 기간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4) 교체빈도 감점	(-1)	○ 감리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제13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건) , 비상주 (건)												
나-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고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163(2007.05.1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로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 채 비 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 동 비 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 (법인세 차감 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 투자비율(최근3개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계		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 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비교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무 소 :

주 소 :

연 락 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공사		사업승인일	20	년 월 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20	년 월 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3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3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사유로 인하여 현재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지**되고
있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
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인)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210mm × 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 하겠으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연번	용역수행			적용요율(%)			환산 연면적 (㎡)
	용역명	감리기간	연면적(㎡)	환산비율 (3년 이내수행기간/전체감리기간)	공사종류 요율	이행 비율 (도급 비율)	
합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 그 외는 “80” %로 기재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 업 명	기 간					
총 괄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비 상 주 감 리 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자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인천시남동구구월동 1129-19 이노프라자텔 402호
(주)삼정하우징 대표이사 이 주 열, 정 덕 수
032) 435-4787
3. 설 계 자 :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306-13번지 M&W 4층
(주)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 양 근
02) 2671-9141
4. 시 공 자 : 서울시종로구계동 140-2
(주)현대건설 대표이사 이 종 수
02) 746-3154
5.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 194-1번지일대
 - 대지면적 : 40,031m²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32층 아파트 5개동 부속동 5개동 594세대
 - 전용면적 84.9974m²60세대
 - 전용면적 84.9179m²60세대
 - 전용면적 117.2657m²120세대
 - 전용면적 115.3907m²118세대
 - 전용면적 132.6151m²114세대
 - 전용면적 145.7525m²118세대
 - 전용면적 170.6445m²22세대
 - 전용면적 207.9601m²22세대
 - 연 면 적 : 127,718.1361m²
 - 공사기간 : 2007.09.10~2010.12.31(40개월)
 - 건축공사기간 : 2007.09.10~2010.12.31
 - 토목공사기간 : 2007.09.10~2008.5.31(차),
2009.12.01(1차)~2010.12.31(2차)
 - 기계설비공사기간 : 2007.12.01~2010.12.31

- 전기공사기간 : 2007.12.01~2010.12.31
- 소방(기계.전기)공사기간 : 2007.12.01~2010.12.31
- 정보통신공사기간 : 2008.05.01~2010.12.31

○ 사업승인일 : 2007.08.17

○ 착공예정일 : 2007.09.10

6. 사업비

○ 총사업비 : 342,421,125천원

○ 대 지 비 : 127,052,418천원

○ 총공사비 : 117,153,489천원

가. 감리대상건축공사비 : 99,708,098 천원

나. 감리대상제외공사비 : 없음

다. 타법감리대상공사비 : 17,445,391천원

○ 간 접 비 : 81,183,495천원

○ 부가가치세 : 17,031,723천원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비 고
총 공 사 비	순 공 사 비	토목공사	8,405,971	8,405,971	-	-	
		건축공사	73,566,358	73,566,358	-	-	
		기계설비공사	11,164,934	11,164,934	-	-	
		전기공사	8,479,865	-	-	8,479,865	
		정보통신공사	3,935,702	-	-	3,935,702	
		소방설비공사	3,880,161	-	-	3,880,161	
		소계	109,432,991	93,137,263	-	16,295,728	
	일반관리비		3,830,155	3,259,805	-	570,350	
	이 윤		3,890,343	3,311,030	-	579,313	
	소 계		117,153,489	99,708,098	-	17,445,391	
간 접 비	설계비		3,931,728		3,931,728		
	감리비		2,704,419		2,704,419		
	일반분양시설 경비		43,942,997		43,942,997		
	분담금 및 부담금		24,285,444		24,285,444		
	보상비						
	기타사업비성 경비		6,318,907		6,318,907		
	소 계		81,183,495		81,183,495		
대 지 비			127,052,418		127,052,418		
부가가치세액			17,031,723		17,031,723		
총사업비 계			342,421,125	99,708,098	225,267,636	17,445,39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단위:천원

구분	분야	공 종	전 체	감리대상	감리제외	타법감리	비고
순 공 사 비	토 목 (13개 공종)	토공사	1,422,932	1,422,932			
		흙막이공사	199,392	199,392			
		비탈면보호공사	-	-			
		옹벽공사	-	-			
		석축공사	-	-			
		우오수공사	403,550	403,550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10,347	110,347			
		도로포장공사	870,956	870,956			
		교통안전시설물공사	91,432	91,432			
		정화조시설공사	-	-			
		조경공사	4,463,323	4,463,323			
		부대시설공사	844,039	844,039			
		소 계	8,405,971	8,405,971	-	-	
	건 축 (23개 공종)	공통가설공사	1,463,330	1,463,330			
		가시설물공사	1,439,725	1,439,725			
		지정및기초공사	1,839,159	1,839,159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27,205,478	27,205,478			
		용접공사	-	-			
		조적공사	1,585,406	1,585,406			
		미장공사	5,214,224	5,214,224			
		단열공사	347,380	347,380			
		방수/방습공사	1,775,655	1,775,655			
		목공사	3,126,421	3,126,421			
		가구공사	8,871,227	8,871,227			

		금속공사	354,426	354,426			
		지붕 및 흙통공사	623,593	623,593			
		창호공사	4,159,624	4,159,624			
		유리공사	800,935	800,935			
		타일공사	3,153,196	3,153,196			
		돌공사	2,099,782	2,099,782			
		도장공사	912,489	912,489			
		도배공사	1,085,122	1,085,122			
		수장공사	1,768,608	1,768,608			
		주방용구공사	2,550,742	2,550,742			
		잡공사	3,189,836	3,189,836			
		소 계	73,566,358	73,566,358	-	-	
	기계 설비 (9개 공사)	급수설비공사	1,972,439	1,972,439			
		급탕설비공사	1,784,587	1,784,587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939,257	939,257			
		위생기구공사	2,352,899	2,352,899			
		승강기계공사	1,634,081	1,634,081			
		난방설비공사	1,802,660	1,802,660			
		가스설비공사	336,828	336,828			
		자동제어설비공사	299,403	299,403			
		특수시설공사	42,780	42,780			
		소계	11,164,934	11,164,934	-	-	
	전 기 (15개공사)		8,479,865			8,479,865	
	정보통신(13개공사)		3,935,702			3,935,702	
	소방설비(2개공사)		3,880,161			3,880,161	
	합 계		109,432,991	93,137,263	-	16,295,728	
	일반관리비		3,830,155	3,259,805	-	570,350	
	이 윤		3,890,343	3,311,030	-	579,313	
	총공사비계		117,153,489	99,708,098	-	17,445,391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883 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 8. 21. ~ 2007. 9. 09.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7. 9. 09. 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충남45나7897(그랜저)외 09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정비팀(☎ 032-453-2820 ~ 5)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06-18	충남45나7897	그랜저	구월3동 1104-22호 제일 감리교회 앞	이영주	인천 남동구 구 월3동1103-13호 중앙주택204호 (06.4/18전입)	기전폐차사업소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만수6동 남동 @101동 지하주 차장 내	권장호	인천 남구 주안 동19-126호	기전폐차사업소
427	서울34마8739	머큐리 세이블	간석1동499-49 호 서현타운 주 차장 내	장안순	서울 마포구 도 화동255번지	기전폐차사업소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구월2동69-48 호 희망@1동 앞	김성동	경기 안산시 단 원구 선부동 993-10호	기전폐차사업소
679	인천30다7929	소나타	만수6동1082번지 창대상가 입구	김용화	인천 남동구 만 수6동1078-3호 하이테크빌리지	기전폐차사업소
365	86거1029	포터	남촌동558번지 남촌성당 옆 사 유지	(주)명호건설	인천 용진군 영 흥면 선재리220 번지	인천폐차사업소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	남동공단 150BL-1LT 앞 공원후문 앞	(주)바이오 그린테크	인천 서구 심곡 동333-12호	인천폐차사업소
407	71오1011	콤비버스	소래풍림@뒤 생태공원입구 (고속도로 밑)	(주)Y.S.T.C	서울 서초구 방 배동823-17호 B101호	인천폐차사업소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간석4동267-12 호 앞	이석기	인천 남구 주안 동385-19호	인천폐차사업소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간석1동449-8호 담옆	신광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31번지 마석주 공@205/1106호 (04.9/24말소)	서울폐차사업소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경기 구리시청(교통)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경기 남양주경찰서(교통)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경기 남양주시청(교행)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경기 부천시청(원미경교)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국민 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679	인천30다7929	소나타	김용화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국민 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국민 연금관리공단 남인천지사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국민 연금관리공단 서인천지사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근로 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407	71오1011	콤비버스	(주)Y.S.T.C	대구 중구청(교행)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대전 지방법원서산지원(사건98카단3304)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서울 강남구 삼성동157번지 (주)동양카드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강남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강북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강서구청(주차)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관악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광진구청(교지)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권장호	서울 구로구 시흥동992-28호 (주)기아자동차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구로구청(교행)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서울 노량진경찰서(교통)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동대문구청(교관)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서울 동작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마포경찰서(교통)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마포구청(교행,세무1)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서초구청(주차)
407	71오1011	콤비버스	(주)Y.S.T.C	서울 서초구청(주차,세무2,산환,교행)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성동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송파구청(교지)
407	71오1011	콤비버스	(주)Y.S.T.C	서울 시청(교단)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양천구청(교지)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2번지 대룡빌딩205호 (주)동인엔바이로개발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김성동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서울 영등포구청(세관,교지,교행)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용산구청(교지)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종로구청(교지)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서울 종로구청(교지)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권장호	서울 중구 태평로2가150번지 (주)삼성캐피탈
427	서울34마8793	머큐리세이블	장안순	서울 중구청(교지)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서울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사건2001카단7121)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인천 계양구청(교행)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이석기	인천 남구 용현동490-83호 배철수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인천 남구청(교통)
516	서울46마7706	라노스	신광현	인천 남구청(교통)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권장호	인천 남구청(교통,세무)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이석기	인천 남구청(환녹,교통,세무)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김성동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679	인천30다7929	소나타	김용화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679	인천30다7929	소나타	김용화	인천 남동구청(교통, 환위, 주관)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권장호	인천 남동구청(세무, 교통, 환위)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인천 남동구청(주관)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이석기	인천 남동구청(환위, 교통)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이석기	인천 동부경찰서(교통)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김성동	인천 부평경찰서(교통)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김성동	인천 부평구청(환위, 교행, 세무)
400	인천83가8762	라이노5톤	(주)바이오그린테크	인천 서구청(환위, 세무, 교통)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인천 시청(교관)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인천 연수구청(교행)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인천 용진군청(환녹, 산업)
365	86거1029	포터	(주)명호건설	인천 중부경찰서(교통)
203	인천30두6108	콩코드	권장호	인천 지방법원(사건2003카단28055)
27	인천72가1760	이스타나	이석기	인천 지방법원(사건2004카단38289)
543	인천80다6403	그레이스	김성동	전남 목포시청(교행)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충남 서산경찰서(교통)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충남 서산시 동문동879-8호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진태구
18	충남45나7897	그랜저	이영주	충남 서산시청(교통, 세무, 환경)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886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7. 9. 4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7. 8. 20 ~ 2007. 9. 4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머 1330	구자만	서구 가좌동 139-22 전인빌라 8/B01 31/3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사건98카단51)	박명석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338-7 105호
인천3너 1449	양익환	계양구 효성동 999-11 뉴서울@ 6/103	인천지방법원 (사건96카단9080)	대한보증 보험(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1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7. 8.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88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박봉자외 18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7. 8. 21. ~ 2007. 9. 5.(15일간)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시어 보험가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3. 의무(책임)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하셨거나 붙임내역과 상이한 경우 증명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5, 2926 FAX : 032-453-288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공고기한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과태료 부과예고서 반송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1	인천31루4304	박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부과예고
2	27러7217	조봉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부과예고
3	05다1749	김연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반송함투입	부과예고
4	인천30도5388	최종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취인 미거주	부과예고
5	인천32거6276	석진철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이사감	부과예고
6	인천30루6494	원무환경(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함 투입	부과예고
7	인천35거9569	석미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반송함 투함	부과예고
8	03거6448	이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주소불명	부과예고
9	40나4000	김경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주소불명	부과예고
10	10모6143	김병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이사감	부과예고
11	96머2777	(주)삼성육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이사감	부과예고
12	인천30러8124	(주)쥬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부과예고
13	86서2660	(주)프리존서비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이사감	부과예고
14	인천2라1990	금호철강(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주소불명	부과예고
15	인천5더2920	다다실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불명	부과예고
16	인천81라2678	(주)한강종합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이사감	부과예고
17	인천80가7665	(주)삼덕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수취인불명	부과예고
18	인천31마4120	북진금속(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수취인불명	부과예고
19	인천35너1524	(주)우진솔루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소불명	부과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7 - 8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대 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주)주립유통외 120건
(붙임 “공고내역” 명단 참조)
 - 공 고 기 간 : 2007. 8. 21. ~ 2007. 9. 5.(15일간)
 - 공 고 내 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 미거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무보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2007. 9. 5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 032-453-2925,2926)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농협, 또는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공고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독촉고지서의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8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자동차 의무보험 납부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2007. 8 수시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성 명	주 소	고지금액	반송 사유	비고
1	17577	86노2959	(주)주립유통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10,000	이사감	납부고지서
2	17578	86노2959	(주)주립유통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00	이사감	납부고지서
3	14388	인천33라1351	성복덕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4	14421	인천7고7066	이순재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5	15246	인천70거9657	이중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원미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6	14430	인천33너5982	이만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7	14394	25조6796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8	14393	25조6796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9	14323	01거5516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0	14392	08오2889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1	14391	08오2889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2	14324	01거5516	MUHAMMAD LATIF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3	15112	인천30모7140	황해수	경기도평택시 팽성읍합정리	201,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4	14851	40가6970	오미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74,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5	14215	인천31두9482	권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16	14216	인천31두9482	권영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17	14852	40가6970	오미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87,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8	15263	인천70거9657	이중재	경기도부천시 원미구원미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19	15111	인천30모7140	황해수	경기도평택시 팽성읍합정리	402,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20	13835	80다1371	김정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38,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21	14059	인천2리5551	김희수	경기도수원시 권선구고등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22	13836	80다1371	김정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9,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23	14991	인천32며7330	이창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24	13673	25다6248	박승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5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25	14060	인천2리5551	김희수	경기도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26	13513	인천31나1572	정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27	15262	인천33고8037	양은미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28	14885	인천32고2305	비승정보통신 (주)	인천광역시 남 동구 만수동	522,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29	13674	25다6248	박승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75,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30	13512	인천31나1572	정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31	15261	인천33고8037	양은미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32	15916	09구2383	임재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33	15915	09구2383	임재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34	14886	인천32고2305	비승정보통신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61,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35	15312	26구2862	김한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36	13459	07고6938	윤금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3,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37	13458	07고6938	윤금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26,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38	14422	인천7고7066	이순재	경산북도 문경시 점촌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39	13681	인천31리9543	김정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522,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40	13682	인천31리9543	김정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61,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41	15230	인천남동자67 91	김성철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16,2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42	15229	인천남동자6791	김성철	전라남도 목포시 서산동	32,4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43	15311	26구2862	김한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	우편함 방치	독촉고지서
44	14108	07구6171	ORIPOV KAHIRAM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45	14107	07구6171	ORIPOV KAHIRAMON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46	14079	76가2227	안만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47	14080	76가2227	안만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48	15038	02더8279	오토비전플러 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2,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49	17667	55루4128	백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50	15039	02더8279	오토비전플러 스(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31,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51	17666	55루4128	백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52	18786	인천31구6038	영성필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3	18466	인천31모2915	(주)태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4	18465	인천31모2915	(주)태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5	18741	인천80가1964	강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6	18740	인천80가1964	강의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7	18230	인천80러1963	(주)에이에스티 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8	18229	인천80러1963	(주)에이에스티 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8,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59	18508	25다7730	(주)한성시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60	18509	25다7730	(주)한성시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61	18787	인천31구6038	영성필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62	18510	인천5녀4717	청수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63	18092	인천35녀4534	(주)죽림석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2,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64	18093	인천35녀4534	(주)죽림석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1,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65	18418	인천80아7705	(주)삼성옥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66	18475	인천80아7719	(주)삼성옥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67	18476	인천80아7719	(주)삼성옥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68	18417	인천80아7705	(주)삼성옥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00	수취인 미거주	독촉고지서
69	18431	인천30두9679	(주)태극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0	18432	인천30두9679	(주)태극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1	18782	인천30나6909	김춘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2	18783	인천30나6909	김춘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3	13533	86보8348	김영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3,000	장기간 방치	독촉고지서
74	561	86주2274	홍사철	인천광역시 남구 학의동	300,000	반송함 투입	독촉고지서
75	18950	인천32녀2134	황돈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6	18949	인천32녀2134	황돈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7	18959	인천4녀4379	황돈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8	18960	인천4녀4379	황돈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79	18325	인천81다7294	(주)세민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4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0	18324	인천81다7294	(주)세민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9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1	18184	인천32나8797	(주)경창기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7,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2	18548	인천70나2443	정석기계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83	18463	인천31루9407	(주)유니마이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4	18940	인천31가7368	(주)유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5	18402	96보6732	(주)대광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6	18401	96보6732	(주)대광조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7	18464	인천31루9407	(주)유니마이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8	18183	인천32나8797	(주)경창기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14,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89	18228	인천70마8725	(주)보광케미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3,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0	18532	인천80나6466	(주)매트로월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0,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1	18500	인천30녀6183	김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92	18501	인천30녀6183	김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93	18533	인천80나6466	(주)매트로월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00,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4	18328	06나2009	LUTSUKH BAYARBAT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900,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5	18329	06나2009	LUTSUKH BAYARBAT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6	18227	인천70마8725	(주)보광케미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6,000	주소 불명	독촉고지서
97	18329	인천5더2059	대흥목재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98	18318	인천31노5292	(주)유비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38,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99	18878	86노5330	(주)라마이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5,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0	18877	86노5330	(주)라마이엔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1	18467	인천73고5968	대신개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2	18468	인천73고5968	대신개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3	18562	86무1485	(주)그린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4	18596	86보2882	(주)대명피앤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05	18597	86보2882	(주)대명피앤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06	18391	인천5더2059	대흥목재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07	18549	인천70나2443	정석기계공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08	18477	인천70아7719	(주)삼성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09	18939	인천31가7368	(주)유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10	18319	인천31노5292	(주)유비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69,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11	18541	인천30고6398	(주)보경티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2	18599	인천80마9712	(주)기성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13	18598	인천80마9712	(주)기성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0,000	이사감	독촉고지서
114	18430	인천30터5152	(주)퍼스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5	18748	09부8592	(주)아트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6	18109	인천34마9696	(주)아트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45,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7	18429	인천30터5152	(주)퍼스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8	18749	09부8592	(주)아트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15,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19	18108	인천34마9696	(주)아트코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9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20	14411	인천32가5470	L.G.U.ANUR UDDA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6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121	14412	인천32가5470	L.G.U.ANUR UDDA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300,000	수취인 불명	독촉고지서

남동구공고 제 2007 - 892 호

공시송달 공고

건설교통부고시 2006-464('06.11.03)호로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인천서창(2) 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소유자 미상 지장물 포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협의할 수 없는 토지 및 지장물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보상장소로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07. 8.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인천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3. 사업 예정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4. 공 고 기 간 : 2007. 8. 22 ~ 2006. 9. 5
5. 보 상 계 획
 - 가. 협의기간 : 2006. 12. 19 ~ 2006. 8. 31
 -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다. 보상금산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3인 (주민추천 1인포함)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 라. 보상장소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전화번호 : 032-450-8104~5
 - 마. 보상금액 및 계약시 구비서류 : 보상장소로 문의
6. 물건조서 : 별첨 1
7. 기 타
공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지장물 세목조서

연 번	지장물 번호	소유자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1	117	소유자 미상	논현동	1-53	농작물건조대	목조합판	17	㎡
				1-53	농기계보관소	목재합판	2.4	㎡
2	118	소유자 미상	논현동	1-53	농작물건조대	목재합판	6	㎡
				1-53	농기보관소	목재합판비닐	5	㎡
3	119	소유자 미상	논현동	1-43	폐관리사	목재합판스레트보온덮개	12.09	㎡
				1-43	방	목재합판스레트보온덮개	11.16	㎡
4	314	소유자 미상	서창동	산29-27	농기구보관창고	목재썬라이트조(3m*3m)	1	개
				산29-27	창고	목재스레트조(1.7m*1.5m)	1	개
				산29-27	난간	목재난간	1	식
				산29-7	창고	목재천막조(2.5m*2.5m)	1	개
				산29-7	목재올타리	120m	1	식
				산29-7	대추나무	5년생	136	주
				산29-7	배나무	10년생	5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7 - 895 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인개각

- 개각 사유 : 통합민원창구 민원전용 인증기 공인의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
- 최초 사용년월일 : 2007. 8. 24
- 개각 공인명 및 인영

개 각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2)	

개 각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6)	

2. 공인폐기

- 폐기 사유 : 통합민원창구 민원정용 인증기 공인의 개각
- 폐기년월일 : 2007. 8. 24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폐 기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폐 기 공 인 명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민원지적과통합민원용)	

제 2007 - 2 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구 분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위촉일	비고
당연직위원	공공기관	구청장	윤태진	남	2007.8.25	
당연직위원	공공기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남	2007.8.25	
당연직위원	공공기관	보건소장	곽광희	남	2007.8.25	
위촉위원	공공기관(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	백경중	남	2007.8.25	
위촉위원	공공기관(교육)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조규석	남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복지이용시설)	남동자원봉사센터 소장	황광울	남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복지이용시설)	노인복지회관 관장	김재천	남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복지이용시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장	정해윤	여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복지이용시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현정	여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복지생활시설)	초도요양원 원장	김동완	남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보건단체)	남동구의사회 회장	임순옥	남	2007.8.25	
위촉위원	민간기관(보건단체)	남동구약사회 회장	조상일	남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주민)	남동구의회사회도시위원장	박강석	남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주민)	남동사랑나눔기사무국장	김현환	여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종교계)	남동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재승	남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학계)	인하대행정대학원 교수	유해숙	여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학계)	성산효도대학원 교수	김성철	남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공익단체)	참의료실천단 남동지부장	오명심	여	2007.8.25	
위촉위원	이용자대표(공익단체)	인천연대남동지부집행위원장	권기태	남	2007.8.25	
당연직위원	실무협의체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